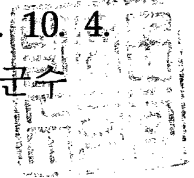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1602

제출일자 : 2018. 10. 4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에 이어 노인복지관으로서 두 번째 신축·운영되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적용하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2조(명칭 및 위치) “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” 명칭 및 위치 신설
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1. 달성군 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
2.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

나. 제4조(운영) “민간위탁에 대한 경쟁 원칙 명시”(안 제4조제3항)
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- 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8. 9. 7 ~ 2018. 9. 27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1. 달성군 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
2.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 이라 한다)의 명칭은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” 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 내에 둔다.</u>	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 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u> 1. <u>달성군 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</u> 2. <u>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 구벌대로 754</u>
제4조(운영) ① · ② (생략) ③ <신설>	제4조(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“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“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